

『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□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국민의힘 서초구 제4선거구 최호정 의원입니다.

□ 『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
관한 조례안』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
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지금부터 『서울특별시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 등의 보호 및
지원에 관한 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
겠습니다.

□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,

폭언과 욕설, 협박, 폭행, 성희롱 등 공무원들을 상대로
한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.

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정신적·신체적 피해가

끊이지 않고 있으며, 제도적 보호장치 미흡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.

- 행정안전부도 악성민원으로 인한 피해 개선을 위하여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조치를 위해 자치법 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- 이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, 주요 내용으로는, 민원업무 및 수행 공무원과 폭행·폭언 등의 용어를 정의 하고, 민원업무 수행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에 대한 시장 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!
본 의원은 공무원은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 성실히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지만, 이 또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바탕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과, 아울러 조례 제정을 통 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상호 간에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 키는 노력에 우리가 앞장서야 한다는 생각입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발의 취지를 이해하셔서 행정자치위원장님

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,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
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